#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9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9.

발 의 자:한병도·박해철·이해식

장철민 · 신영대 · 정일영

윤준병·김영배·정태호

양부남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,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.

그런데,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위헌·불법 행위를 자행함.

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·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.

이에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4(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) 선거관리위원회청사 방호와 경비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두며,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5조의4(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)
	선거관리위원회청사 방호와 경
	비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
	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	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두
	며,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
	무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
	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.